

# 忠清北道議會事務處 專門委員 資格에 관한 規定改正(案)

第1條 (目的) 이 規定은 地方自治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의 專門委員 任用協議時 그 資格 基準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委員會 運營을 圓滑히 補佐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資格基準) 專門委員은 다음 各號의 資格基準에 該當하고, 職務에 必要한 專門知識을 가진 者로 한다.

## 1. 一般職

- 가. 地方4級 公務員으로 在職中인 者
- 나. 道本廳 및 外廳 課長級으로 在職中인 者
- 다. 가, 나항에 該當하는 者로서 만 55세 以下인 者

## 2. 別定職

- 가.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5級以上 公務員으로 5年以上 勤務하였거나 同等한 資格을 가진 者
- 나. 地方議會委員 4年以上 經歷이 있거나, 委員會關聯 業務分野 政府投資 機關 團體에서 課長級 以上으로 5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
- 다. 委員會所管分野 博士學位 所持者
- 라. 其他 위 資格要件에 준하는 經歷과 議會運營等에 關한 專門知識이 豊富하다고 認定되는 者
- 마. (新設) 위항에 該當하는 者로서 만 55세 以下인 者

第3條 (協議의 節次) ① 專門委員의 轉入, 轉出은 議長의 事前協議가 있어야 한다.

단, 協議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運營委員會에서 充員 對象者가 第2條의 資格基準에 適合한지 根據書類等을 提示받아 審査한 後 그 結果를 書面으로 議長에게 提出한다.

附 則

이 規定은 1992年 9月 25日부터 施行한다.

附 則

이 規定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.